

“국고지원 안전보건진단을 마치고”

당 협회에서는 국고지원으로 사업장에
서의 안전, 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토록하여 산업
재해의 감소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50인 미만의 198개 영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을 마쳤으며 진단결과에 대
한 종합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였다.



경남지부
산업위생과장

안 규 동

산업안전보건진단의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 조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시행해야 할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이 전문적인 안전 보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해 사업주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진단을 맡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금번 국고지원 산업안전보건진단의 실시는 규칙 제 54 조에 따라서 대상 사업장을 선정,

진단 비용을 전액 국고지원 하는 것으로 대한 산업보건협회는 보건에 관한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당협회 경남지부에서는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 관할 사업체 중 50인 이하의 19개 제조업체를 진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실시기간 중 애로사항과 특이한 사항을 서술 하기로 하겠다.

첫째, 선정된 19개 업체는 진단 대상의 요인이 84년도 산재사고 다발 업체로서 규칙 제 54 조 1 항에 해당하나 동 규칙 2 항의 해당사항으로 규칙 제 43 조 3 항에 관한 유해 위험업무중 전 업체가 13개 업무에 관련한 “작업 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들은 아니었다. 이들 업체는 대개 영세한 업주가 많으며 (19개소 중에서 14~15개소) 그 특징은 노후화된 건물에서 조업중이며 현재의 장소에

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며 (8개 업소는 86년 5월 전에 이전계획) 현재의 공정에 맞추어 계획한 건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

이 외에 기계부품들을 제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 (수출 1. 자가생산 및 주문생산 3)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각 업체의 현장 정리정돈의 상태가 대부분 불량 (2개 업소는 양호)하며, 여름철에 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작업자 수가 적고 크지 않은 기계부품 제조이므로 작업기계는 선반 「밀링」 「드릴」 몇 대씩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소음의 경우 현저히 강렬한 소음을 발생하는 업체는 프레스를 보유한 3개 업소와 제재소 1개 업소 정도이며 나머지 15개 업소는 부분적으로 소음이 다소 높던가 소재 변경에 따라서 다소소음에 폭로되는 정도였다. 분진의 경우도 기계 가공이 중심인 업체들이므로 부분적인 용접과 주물 공장 (2개 업소)을 제외하면 현저히 분진을 비산하는 업체는 없었다. 조명의 경우 기계 가공을 하는 경우 작업등 배치는 어느정도 양호하나 전체 조명의 경우는 대개 20년 넘은 공장 건물이며 현재의 공정과 무관하게 지어진 건물이기때 시설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빈약한 곳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19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인근 공단으로 이전 계획 (86년 5월 입주 예정)이 있어 환기 문제가 지는 어느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된다. 기타 유해인자로는 도장 작업이 다소 있으나 작업량은 월 1~2회 정도의 소규모이며 특정 유해물 (염산, 황산)을 사용하는 업소도 1개 뿐이었다.

고온의 경우 용해로가 있는 곳이 3개 업소 (2개소는 주물공장)이고 주물공장은 용해작업이 주 1~2회 정도였다. 이상에서 볼 때 작업환경 자체는 대부분 큰 유해요인이 없으나 부분적 유해요인만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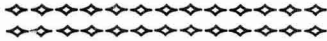
할 만한 유해조건을 가지고 있는 업소는 3-4개소 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의 보건관리상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첫째 신규 채용자의 채용검진을 실시하는 곳은 단 1개소 뿐이며,

둘째, 85년도 작업환경측정이나 과거 실시한 업체는 4개소 뿐이며,

셋째, 특수 검진을 실시한 업체는 4개소이며 누락된 업체는 7-8개 업소 정도이며 85년도 일반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3개소이고 대부분의 업소가 다소의 누락자를 두고 있으며 누락이 전혀 없는 업체는 5개소 뿐이었다.

이러한 공통점 외에 보건에 관한 교육 (신규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을 실시하는 업체는 한 곳도 없으며 안전 수칙 정도만을 일부업체가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보건관리를 전담할 직원을 둘 만한 업체가 없었던 것은 이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 또는 당협회에 문의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점이다. 실제로 영세한 조업 조건에서 이 분야를 전담할 직원을 두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나 본 협회의 기능이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업체도 4~5개소에 불과했다. 또 한가지 본 진단 실시 중 15개 업체가 조업 단축 (생산량 측면)을 하고 있으며 전 가동율의 70%미만 수준이었다. 이 문제는 조업 사정이 좋을 경우 (전 산업에서) 근로자 이직으로 근로자 확보가 어렵고 생산 독려 때문에 보건에 관한 관심을 소홀히 하며 조업 사정이 나쁜 경우 사기저하 자금사정 등으로 이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에서 금번 19개 업소가 50인이하 업체의 산업재해의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며 보건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업체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및 건강관리 개선에 관한 문제를 보호구 착용이나 간단한 공정개선등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도 있으나 이외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우리와 같은 기사의 지식으로는 역

부족임을 느낀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산업 안전 보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표 달성에 이같은 진단결과가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지만 이같은 소망은 진단자체의 평가가 명확히 나온 후에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부
산업위생과장
이 은 영

금번 실시된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중 재해 발생이 동종업종보다 높은 약 200개의 사업장에 대한 국고지원 안전보건진단사업을 마치고 나서 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해온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10여년전 입사 당시에 국고지원에 의해 실시했던 산업보건사업이 회상되어 감회도 깊었거니와 이와 같이 뜻깊은 사업을 마련하여 후원해 주신 관계기관에 대해 감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우리 나라에 산업보건의 도입된지 어언 30여년, 그중에서도 1963년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설립되어 실질적인 산업보건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실시된지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나 설립초기 정부의 지대한 관심속에 일부 사업장에 대해 국고지원에 의하여 무료실시되어 왔던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과 개선지도 등 일련의 산업보건사업이 1974년을 마지막으로 끝났었고 그이후의 산업보건사업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경비부담속에 오늘날까지 일부 사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의 사업체가 방관 내지는 강압에 못이겨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띄게 됨으로서 많은 물의와 잡음을 일으켜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되었던 의무와 부담을 전체적으로 볼때는 미미하기는 하나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기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하던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선도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아래 실시된 첫단계 사업으로서 올해에 약 200개의 재해다발 영세사업장에 대한 국고지원 진단사업이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수해대상범위를 넓혀 약 1000개의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토록 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에 접하게 되니 이제야 말로 일방적인 규제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정부와 사업체가 상호 지원, 협조에 의해 의욕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여 기술의 축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는 듯하여 반가운 한편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해대상범위가 확대되어 전사업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된 보건진단에 참여한 조사자로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세 소규모사업체 일수록 사업주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및 기피현상이 눈에 띄게 많아 작업조건과 환경이 불량한 곳이 많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주가 산업보전에 관한 법적 의무와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사근로자의 지적수준이 대체적으로 낮고 이직율이 높은 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되었으며

셋째, 일부 사업체에 있어서는 재무구조가 빈약하여 작업조건에 맞는 공간의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네째로, 검진참여 의료기관의 무성의 및 부실검진, 판정착오가 생각외로 많음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인 홍보와 계몽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이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하에 집단보건관리제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기관이 측면에서 사업주를 도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보건관리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검진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지도와 감독을 강화, 부실검진을 일소해야 하며 검진기관 또는 검진종사자의 주관에 따라 판정기준이나 사후관리 조치에 대한 의견이 각각 달랐음은 물론 판정결과가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내용도 있었다.

그러므로 검진결과의 판정이나 사후관리방

안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 검진후의 사후조치, 결과통보, 통계처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진단이 근로자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이란 비평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건강진단이 되도록 검사항목의 검토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올해 국고지원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은 이번의 진단을 계기로 재해의 감소는 물론 작업환경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랑과 화합속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산업발전에 앞장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여 안전보건의 필요성과 그 성과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앞으로 국고지원 안전보건진단사업이 전 사업장에 확대 실시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부딪히면, 그 사실이 아무리 곤란하고 얼핏 보기에는 절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보다는 우리의 태도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어떤 사건은 그것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한번 해 보지 못하고 패배당하는 수가 있다. 그 사실은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겨 보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그 사실에 억눌리고 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신있고 낙관적인 사고방법은 그 사실을 부드럽게 하거나 혹은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